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4일, 유용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의원)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개정안은 현행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현행 ‘저금리 용자’ 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포괄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개정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지원은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서 방산업체등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결국 자금 출연은 방산업체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종이고, 법 문언상 방산업체등에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자금 출연’ 문구는 삭제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